

# 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시행. 2023.6.28.)에 따른 연령규정 정비
  - 총 3개 조례 / 4개 조문(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해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#### ○ 개별 조례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부터 안 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의 개정)까지 개별 조례에서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에 대해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하여 “만”표기를 모두 삭제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 및 기준 확립을 위해 「행정기본법」 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행정기본법」에서는 “법령상 나이는 「민법」에 따라 ‘만 나이’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지만 일상생활과 일부 법률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이 달라 이에 대한 법적·사회적 기준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.”라고 개정사유를 말하고 있으며, 법제처 정비 권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“만”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에 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연령 해석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  
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  
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나이 관련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~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: 생략

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
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만 6세 이상 만”을 “6세 이상”으로, “만 13세 이상 만”을 “13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

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어린이“란 <u>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생, ”청소년“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30% 감면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<u>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</u></p> <p>다·라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6세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<u>13세 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</p> <p>다·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이용권의 발급 등)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19세</u>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4조의2(이용권의 발급 등) ① - -----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